강 남 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취득세) 감면신청 결정처리(법인합병)

2015. 10. 12. 주식회사 백영이 법인합병으로 인한 강남구 논현동 89-10 부동산(건물,토지)을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기에 관계법령과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감면 결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지방세 감면신청 내역

법 인 명	㈜백영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3길 11(성수동2가)	등기등록의종류	과세대상물건	
물 건 지	논현동 89-10	소유권 이전	토지(㎡)	건물(㎡)
			1988.1	1307.52

세 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감면(비과세)세액	차인액	감면비율
취 득 세	25,175,934,720	1.5%	377,639,020	377,639,020	0	100%
농 특 세 (감면분)		20%	75,527,800	75,527,800	0	비과세

나. 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제1항 제3호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법인합병의 범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1.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1항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다. 신청서류 검토 및 감면 처리

- 합병법인 **㈜백영은** **㈜백영논현을** 흡수합병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 신청서류를 검토한 바, 두 법인의 합병은 소비성서비스업 제외한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해 왔으며, 상기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는 상기 법규에 의거 비과세처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비과세감면내역서
2. 감면신청서류. 끝.

주무관 **김택중** 법인2팀장 **이영범** 세무1과장 **이상규** 기획경제국장 10/30 **김용운**

협조자

시행 세무1과-21914 ( ) 접수 ( )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685 /전송 02-3423-8833 / hiktj85@gangnam.go.kr / 부분공개